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 - 107 |
|----------|----------|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 및 지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2조)
- 라. 평가 및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2)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4)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7. 18. ~ 8. 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안 제12조 후단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시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주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여가·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노인 교육, 여가,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정산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이용자에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경로당은 별지 서식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지원 중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회원 간 분쟁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률이 총 회원 수의 30% 미만인 경우
7.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록 회원 조사
2. 경로당 이용 인원 조사

3. 그 밖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문 조사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0 년 /4분기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서

경로당명 : (전화번호)

정산내역

| 구 분 | | 이 월 액 (가) | 수 령 액 (나) | 지 출 액 (다) | 잔 액 (라) | 비고 |
|-------|---|--------------|--------------|--------------|------------|----|
| 계 | | | | | | |
| 운 영 비 | 월 | | | | | |
| | 월 | | | | | |
| | 월 | | | | | |
| 냉·난방비 | 월 | | | | | |
| | 월 | | | | | |
| | 월 | | | | | |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경로당 회장

(인)

마포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및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2328(2019.2.27.)호 관련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근거

- 운영비 매칭비율(국 : 시 : 구 = 0 : 50 : 50)

- 냉·난방비 및 양곡비 매칭비율(국 : 시 : 구 = 10 : 45 : 45)

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19. 1. ~ 2023.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이후 계속)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국비 보조금 | 15,869 | 16,107 | 16,349 | 16,594 | 16,843 | 81,761 |
| | 시비 보조금 | 367,810 | 373,327 | 378,927 | 384,611 | 390,380 | 1,895,055 |
| | 구비 보조금 | 888,987 | 902,322 | 915,857 | 929,594 | 943,538 | 4,580,298 |
| | 소계(b) | 1,272,666 | 1,291,756 | 1,311,132 | 1,330,799 | 1,350,761 | 6,557,115 |
| □ 총 비용(a-b) | | 1,272,666 | 1,291,756 | 1,311,132 | 1,330,799 | 1,350,761 | 6,557,115 |

※ 통계청 물가 상승률(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국, 시, 구비 예산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류효정 (☎8863)